# 공지사항

##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국인 입국 용이 안내

외무부에 의하면 카리브해 도시국가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이하 T&T)공화국은 '88년 1월19일 출입국 관리법을 일부 개정, 종전 법적으로 엄격한 입국 통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아국인의 동국입국이 아래와 같이 다소 편리해졌으니 관련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한국인은 사증 면제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증을 요함은 종전과 같음.
2. 한국인은 T&T 입국전에 제3국 주재 T&T 공관이나 주한 영국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함. 다만 종전에는 사증을 신청하면, T&T 본국 정부에 조회,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급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법개정 이후에는 본국 조회가 생략되며 따라서 신속히 사증을 발급토록 조치되었음.
3. 한국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증없이 T&T에 도착하였을 경우 공항 이민당국에 공항의 소정양식, 여권, 항공권을 제시, 입국목적 등을 설명하고 약간의 수수료(약 $30상당)를 지불하면 사증없이 입국 허가됨.

1988년 2월 15일
대한무역진흥공사사장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자재 수입자금 융자대상품목 고시

**상공부고시 제88-12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자재 수입자금 융자취급특례에 의거 해당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년 3월 11일
상 공 부 장 관

다 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자재 수입자금 융자대상품목 : 별첨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상공부고시 제87-26호 및 제87-49호를 폐지한다.

중소기업등에 대한 원자재 수입자금 융자대상품목

| HS | 품 명 |
|---|---|
| 2704 | ○주물용 코우크스(001010) |
| 2839 | ○규산지르코늄(901000) |
| 2902 | ○SBR 고무제조용 스티렌(500000) |
| 2914 | ○메칠에틸케톤(120000) |
| 2916 |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 환식모노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슬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111000, 119000, 121000, 122000, 123000, 124000, 129000) |
| 2929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101000) |
| 3202 | ○무기유연제(901000) |
| 3204 | ○합성유기착색제(110000, 121000, 122000, 160000) |
| 3920 | ○플라스틱제의 기타판·쉬이트·필름·박 또는 스트립(200000, 410000, 420000, 610000, 620000, 690000) |
| 3921 | ○플라스틱제의 기타판·쉬이트·필름·박 및 스트립(120000, 192000, 194010, 194020, 194090, 902000, 904010, 904020, 906010, 906020, 906090, 909090) |
| 4101 | ○HS 4101에 해당하는 전품목 |
| 4102 | ○HS 4102에 해당하는 전품목 |
| 4103 | ○기타의 원피(100000, 901000, 909000) |
| 4104 | ○소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210000, 220000, 290000, 310000, 390000) |
| 4403 | ○원목(109000, 201000, 202000, 209000, 311000, 321000, 332010, 341000, 910000, 991030, 991040, 999090) |
| 4407 | ○제재목(211000, 212000, 214000, 232000, 910000, 991010, 991020, 991030, 991040, 993020, 993030, 993040, 999090) |
| 4703 | ○HS 4703에 해당하는 전품목 |
| 4704 | ○HS 4704에 해당하는 전품목 |
| 4705 | ○HS 4705에 해당하는 전품목 |
| 4706 | ○HS 4706에 해당하는 전품목 |

# 공지사항

| HS | 품 명 |
|---|---|
| 4707 |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00000, 200000, 300000, 900000) |
| 4804 | ○크라프트라이너(110000) |
| 4805 | ○SCP 골심지(4805 100000) |
| 5003 | ○누에고치 웨이스트, 풀솜, 견노일 (101000, 102000, 902000) |
| 5005 | ○견방사(002000) |
| 5102 | ○앙고라 토끼털(023000) |
| 5105 | ○순모울톱(291000) |
| 5205 | ○HS 5205에 해당하는 전품목 |
| 5206 | ○HS 5206에 해당하는 전품목 |
| 5401 | ○나이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101000) |
| 5402 | ○합성필라멘트사(100000, 310000, 320000, 410000, 510000, 610000) |
| 5509 |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의 것 및 주로 면과 혼방한 것(311000, 312000, 321000, 322000, 530000) |
| 5604 | ○강력사(200000) |
| 7019 | ○HS 7019에 해당하는 전품목 |
| 7201 | ○주물용 선철(101000) |
| 7202 | ○페로실리콘(210000) |
|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110000, 120000, 130000, 140000, 210000, 220000, 230000, 240000) |
| 7209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20000, 130000, 140000, 220000, 230000, 240000, 320000, 330000, 340000, 420000, 430000, 440000) |
| 7211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의 것과 기타(410000, 490000) |
| 7213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310000, 390000, 410000, 490000) |
| 7219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330000, 340000, 350000) |
| 7220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200000) |
| 7221 | ○스테인레스강의 봉(000000) |
| 7225 | ○방향성 규소강의 것 및 기타(101000, 300000, 500000) |
| 7226 | ○방향성 규소강의 것과 열간압연 및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 (101000, 910000, 920000) |
| 7227 | ○기타 합금강의 봉(909000) |
| 7228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300000, 400000, 500000, 600000, 800000) |
| 7403 | ○정제한 동(110000, 191000, 199000) |
| 7404 | ○동설(000000) |
| 7410 | ○동의박(110000, 120000, 211000, 219000, 221000, 229000) |
| 7502 | ○니켈괴(101000, 109000, 200000) |
| 7601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100000) |
| 7602 | ○알루미늄설(000000) |
| 7606 | ○알미늄의 핀 쉬트 및 대(111000, 119000, 120000, 911000, 919000, 920000) |
| 7607 | ○알미늄의 박(111000, 119000, 191000, 199000, 201000, 209000) |
| 7802 | ○연의 웨이스트와 스크랩(000000) |
| 7901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110000) |
| 8542 | ○초소형 전자회로 부분품(909000) |

(주) : ( )내 숫자는 HS 10단위임.

## 근로자에 대한 대통령 연설문

지난 3월10일 근로자의 날에 즈음하여 청와대를 방문한 근로자 대표들에 대한 대통령 즉석 연설 내용중 요지를 다음과 같이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업체에서는 근로자와의 대화시 활용하는 방법 등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3월 22일
상 공 부 장 관

다 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나의 큰 기쁨입니다.

900만 우리 근로자는 나라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오늘처럼 거대한 선박, 자동차로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우리 제품들이 세계의 모든나라,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없는 곳이 없는 수출국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어릴때 배고픔에 시달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온 우리 근로자들 때문이었읍니다.

나는 온 국민과 함께 900만 근로자에게 감사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축하하며 우리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청와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남다른 훌륭한 일을 하여 큰 상을 받으신 여러분을 이 모든 분들의 대표로 만나게 되니 반가움과 기쁨이 더합니다.

우리나라 900만 근로자와 그 가족은 전 국민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분들이 안정되고 행복하며 보람있는 생활을 할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선진복지사회가 되며 진정한 "보통사람의 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시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람대접,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아직 못 받고 있는 부문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노동의 조건과 생활의 수준이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격심했던 노사분규는 기업들에게도, 근로자들에게도, 또 정부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읍니다.

기업인은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동반자로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인격을 존중하고 기업이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근로자의 몫을 더 넉넉히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노사공영은 반목과 투쟁이 아니라 서로 필요로 하고 이해하는 동반자 관계에서 이룩될 수 있읍니다.

정부도 학력간의 임금격차, 관리직과 노무직과의 격차를 줄이고 적극적인 소득분배정책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도와 나갈 것입니다.

노사간의 문제는 자율적인 협조로 해결토록 하고, 정부가 더 가진 사람의 편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잘 발전하면 이러한 모두의 노력으로 근로자들이 중산층이 되는 사회를 머지 않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수의 가진 사람과 절대다수의 못가진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밋형의 사회가 아니라 목이 없이 둥근 조선백자항아리처럼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경제의 민주화이며 보통사람의 시대입니다.

나는 앞으로 근로자 여러분과 만나는 기회를 가능한한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읍니다.

## '88서울 장애자올림픽대회 개최 안내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동안 제8회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를 개최한다.

1. 엔트리 현황

1월31일로 일단 마감한 2차엔트리 접수국은 중공, 헝가리, 폴랜드, 유고 등 공산권 국가를 포함 모두 54개국이며 소련, 스리랑카, 모로코, 싱가폴, 나이지리아가 텔렉스를 통해 참가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소련의 참가는 장애자 올림픽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당 조직위원회는 ICC와 협의, 앞으로도 참가를 요청하는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

최종(3차)엔트리는 3월15일에 발송하여 7월15일 마감하게 되며 이때 신청한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대진표를 작성, 참가선수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선수단 규모는 약4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개·폐회식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개회식 공연행사는 서울올림픽 개회식 공연행사 작품 7편과 장애자들이 출연하는 작품 2편이 어우러져 화려하고도 조화있게 꾸며진다.

개회식 공연행사에 서울올림픽 작품을 연계하는 것은 첫째, 서울장애자올림픽이 진정으로 장애자들의 가장 큰 잔치임을 증명하고 둘째, 서울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공연을 볼 기회를 주며 세째, 입장료 수입을 대회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데 있다.

폐회식에는 서울올림픽 공연행사 작품 1편과 장애자 출연작품 1편으로 꾸며 석별의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한다.

3. 보도지원

올림픽 주경기장, 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 상무체육부대, 선수촌, 본부호텔에 프레스 센타를, 잠실체육관, 학생체육관, 올림픽공원내 수영경기장, 체조경기장에 보도실을 설치 운영할 것이며, 체재

편의를 위하여 보도진 호텔을 지정하고 경기장수송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이다.

프레스 센타에는 보도진의 기사작성과 현장송고 편의를 위해 FAX, TLX 등을 설치 운영할 것이다.

4. 대표선수 선발

약60개국으로 예상되는 참가국중 종합10위(금메달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팀은 16개 종목(레슬링 제외)에 참가하며 선수 303명, 임원 9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第19回 韓国電子展覧会 開催 案内

本会는 오는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서울 三成洞의 KOEX 別館에서 第19回 韓国電子展覧会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전람회는 '88 서울국제무역박람회('88. 10. 20~10. 31)기간중에 개최되므로 美国, 日本의 参観団을 비롯하여 英国 및 東南亜電子展 参観団 등 주요 그룹 바이어, 개별 바이어 등 총 5,500여명의 海外 바이어가 来訪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읍니다.

또한 国内外 15개국 470여개 업체가 7만여점의 尖端電子製品을 전시할 예정이며 附帯行事로 「電子部門 新製品 特別展示」, 「尖端電子技術세미나」, 「카탈로그競進大会」 등을 개최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다음의 개요를 참고하여 出品 및 각종 附帯行事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展示面積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선착순 접수분에 한함)

1) 目 的

- 電子工業의 発展像을 国内外에 널리 홍보
- 輸出의 지속적인 伸張과 輸入先의 다변화
- 技術開発과 生産性 向上으로 製品의 고급화
- 出品業体間의 상호 情報交換에 의한 交易 拡大
- 製品, 原副資材 및 製造施設의 동향 파악
- 바이어들의 製品選好에 따른 新製品 개발 의욕 촉진

2) 기간 및 観覧時間

- 기간 : '88. 10. 21~10. 26(6일간)
- 観覧時間 ┌바이어 : 매일 09 : 00~13 : 00
  └일반인 : 매일 13 : 00~17 : 00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88. 5. 2~5. 31(1개월간)
- 신청장소 : 本会 展示事業部 展示課 (553-8725, 553-0941/7)
- 참가비 ┌기본부스 : 65,000원+附価税/㎡
  └독립부스 : 85,000원+附価税/㎡
- 附帯施設 신청기간 : '88. 5. 2~7. 31(3개월간)

## 기술신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요령 안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82호**

본회는 전자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중소전자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금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적 타당성 검토기관으로 지정받아 중소전자업체의 신용보증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88년 2월 5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제1조**(목적) 중소전자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개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줌으로써 동 업체가 원활한 신용보증으로 금융지원을 받아 동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

**제2조**(근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중소전자업체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기관으로 지정(기보 제611-371호 : '87년 12월11일)

**제3조**(대상) 기술신용 보증을 받아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전자업체

**제4조**(신청) 이 요령 제3조의 대상자가 본회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받고자 할 때에는 이 요령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사항) 본회는 이 요령 제4조에 의해 기술적 타당성 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이 요령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 음

1.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
   가. 개발코자 하는 기술의 수준 : 외국 및 국내 개발기술 수준과 비교평가
   나. 개발기술의 파급효과 : 개발기술에 대한 국내외 시장성, 관련기술개발 파급효과, 생산성 향상 또는 원가절감 효과, 성능 및 품질향상 효과, 에너지 및 절감 등의 성력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지사항

2. 당해기업의 동기술 개발 능력 평가
   가. 당해기업의 개발능력 : 관련기술의 축적정도, 개발비용 조달능력, 시험연구기자재 확보실태, 개발인력 확보 현황, 외국 또는 국내 전문기술개발기관 또는 업체와의 협력능력 등에 대해 평가
   나. 개발방법의 타당성 : 동사의 동기술 개발계획의 합리성, 경제성을 검토
3. 종합평가 : 개발기술에 대한 평가와 당해 기업의 동기술개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6조**(검토요령) ① 본회는 신청인의 동기술개발계획과 동사에 대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② 본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전문연구기관, 관련학계 등의 자문을 받거나 시험의뢰를 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합리적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검토처리기간) 본회는 기술적 타당성 검토 신청을 받은 후 15일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공휴일은 검토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취급부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주관부서는 정보산업부로 한다. 다만, 품목에 따라 협의 조정 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다.

※ 별도 서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니 본회 기획총괄과(553-094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개발품 신고확인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요령 안내

본회에서는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산업 고도화 실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의 국산화 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금번 본회에서는 동사업의 일환으로 국산전자제품에 대한 원활한 구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산개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사오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국산진흥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2월 15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 신 개 발 품 신 고 요 령

본회는 학교의 실험실습용 전자장비를 비롯한 전자부품 및 소재, 컴퓨터, 통신 및 계측기 등 전전자제품의 신개발품을 업계로부터 신고받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전수요자에게 국산으로 대체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신개발 신고 확인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개발품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읍니다.

가. 대상 : 새로 개발된 실험실습용 전자장비, 전자부품 및 컴퓨터 등 전전자제품

나. 신고에 대한 특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국산 확인
○국내수요 업체에 국산활용 권장
○바이어에 대한 신개발 국산품 홍보
○국산품에 대한 리스자금 지원

다. 신고장소

우편번호 : 135-080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번지 전자회관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부
전화번호 : 553-0941/7, FAX : 555-6195

### 신 개 발 품 신 고 서

| | | | | | | |
|---|---|---|---|---|---|---|
| 업 체 명 | (전화 : ) | | | | | |
| 개 발 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
| 개발기술 및 제품명 | | | 규격 | | | |
| 개발기술의 특징 | | | | | | |
| 수 요 제 품 | | 수 요 자 | | | | |
| 개 발 기 간 | | 개 발 비 (백만원) | | | | |
| 단가(추정) (원) | | 공급시기 | | | | |
| 개 발 효 과 | 수 출 (천불) | | | 수입대체 (천불) | | |
| | '89년 | '90년 | | '89년 | '90년 | |
| | | | | | | |

*카탈로그, 사진, 현품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고요령 : 별첨서식 내용을 공문 또는 FAX로 신고

마. 신고기간 : 개발후 3개월 이내

## '88년도 공업발전기금 지원 신청 안내

'88년도 공업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동기금 운용관리 요령('88. 2.29, 상공부고시 제88－8호)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당해 사업자는 동 요령의 신청서에 의거 해당 기일내에 본회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본회 기획총괄과(전화 : 553-0941, 교환 37, 55)로 문의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접수기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자회관 12층)
2. 신청기간 : '88. 3. 2～3. 31(1차)
   '88. 6. 1～6. 30(2차)
   '88. 9. 1～9. 30(3차)
3. 신청요령 : 동기금운용요령 (상공부고시 제88-8호)참조
4. 신청서류 : 생략

상공부 고시 제 88－8 호

### 1988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1988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년 2월 29일
상 공 부 장 관

Ⅰ.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 부 문 별 | 규 모 |
|---|---|
| 1. 산업기술향상 | 35,000 |
| ○시제품 개발 | 24,000 |
| －전자기기 | 9,000 |
| －기계류 | 15,000 |
| ○신소재 개발 | 5,000 |
| (섬유신기술) | (2,500) |
| ○공통취약기술 개발 | 3,500 |
| ○소프트웨어 개발 | 2,500 |
| 2. 합리화사업 (섬유류시설개체) | 6,000 |
| 3. 재특이자 지출 | 1,815 |
| 계 | 42,815 |

Ⅱ. 전자기기 시제품 개발

가. 융자대상 : 산업용 전자기기(시스템 개발시의 소프트웨어 포함) 및 전자부품의 시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이하같음), 중견기업("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선정한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는 제외함. 이하 같음) 및 산업기술 연구조합

나. 융자우선부문

1) 상공부장관이 기계류·부품 및 소재개발 대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
2) 상공부장관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공고한 기술개발과제(단, 상공부의 지원대상 사업자는 제외)
3)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통한 공동연구 개발사업, 또는 2개업체 이상이 공동개발을 위하여 공동개발협의회를 추진하는 사업
4) 계열화추진을 위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동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모기업단위로 구성된 수급기업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다. 신청

1) 신청기간 : '88. 3. 2～3. 31(1차), 6. 1～6. 30(2차), 9. 1～9. 30(3차)
2) 취급기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화 : 553－0941 교환 37, 55)

Ⅲ. 융자조건 및 취급은행

1. 융자조건

가. 산업기술향상

1) 융자금리 : 연 6%
2) 융자기간 : 5년이내(2년 거치기간 포함)
3) 동일인당 한도 : 2억원 이내(산업기술연구조합을 통한 공동연구인 경우 3억원 이내)
4)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2. 융자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Ⅳ. 융자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보

1. 취급기관은 공업발전기금 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선정기준(또는 선정지침)을 작성하여 융자대상 사업자(차순위 사업자 포함)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상공부장관은 각 취급기관에서 선정된 융자대

상사업자를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여 융자취급 은행장에게 통보한다.

3. 상공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융자대상사업자의 융자대상사업 및 융자금액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취급기관이 융자취급은행장에게 통보한다.

V. 사후관리

1. 취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이 작성 통보한 사후관리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 및 융자취급 행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기금을 융자받는 자는 본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 사업진행 상황을 취급기관(사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공부장관은 융자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가 기금대출을 포기하였거나 타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사용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4. 융자취급은행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 금융기관 시설자금 최고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당초 대출일로 부터 동 자금회수당일까지 징수하며,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 수수료 징수

1. 취급기관은 공업발전기금의 운용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취급기관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콘덴서 제조용 절연유 수입추천 요령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 89호

수출입 공고 개정고시 제88-7호('88. 2. 24)에 의거 본회 수입추천 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년 3월 24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1. 추천 대상 품목

| HS | 품 목 명 | 추천대상품목 | 수입요령 |
|---|---|---|---|
| 1514 | 유채유(채종과 콜자유)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10 1000 | 유채유(조유) | 콘덴서제조용 절연유 | ○자동추천 -콘덴서 제조업체 |
| 90 1010 | 〃 (정제유) | | |
| 90 9000 | 〃 (기타) | | |

2. 국내외 경기동향 국제수지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추천 기준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처리기간 : 1일
4. 구비서류
   가. 수입승인 신청서 : 5부
   나. 물품 매도 확약서 사본 : 1부
   다. 카탈로그 및 용도 설명서 : 1부

부 칙

1. 이 요령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유지·보수용 부분품에 대한 수입 추천 요령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 90호

수입선 다변화품목 공고(상공부 공고 제88-16호) 총칙 제3조, 제4호에 의거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 위임된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유지·보수용 부분품 수입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년 3월 24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1. 추천대상품목
   가.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중 전자제품의 유지·보수용 부분품.
   나. 본회 기계류 국산개발 대상품목으로서 기계류 국산화를 위한 별도 요령에 의거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장비의 유지·보수용 부분품.

# 공지사항

2. 추천대상자
   상기 1의 가, 나항의 실수요자(실사용자 또는 제조업자)
3. 추천기준
   유지·보수용 부분품이 국내수요에 비추어 경제성이 없어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품질,규격, 특성 등이 국산대체 또는 수입선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
4.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5. 구비서류
   가. 수입허가신청서 5부
   나.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1부
   다. 카탈로그 또는 용도설명서 1부
   라. 1의 가항(수입면장 등), 나항(부품수입추천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예외수입 불가피 사유서 1부
   바. 신청량의 적정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6. 수입추천 수수료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추천받은 자는 소정의 수입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기 타
   1.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회 공고 제78호('87. 7. 28)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전자계산기 수입계획 확인 요령 폐지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제 88호**

전자계산기의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전자계산기 수입계획 확인 요령(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47호, 83. 9. 1)을 1988년 4월 1일부로 폐지한다.

1988년 3월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 관세할당 추천요령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 87호**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16(할당관세),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면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412호) 및 상공부소관 품목에 대한 관세할당 추천요령(상공부 공고 제88-12호)에 의거 본회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관세할당신청 및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년 3월 4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다 음

1. 신청자격
   가. 실수요자 및 실수요자단체
   나. 당해 물품생산자(물자수급 원활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다. 무역거래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가, 나항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대상품목 등
   가. 추천대상품목 및 업체, 한계수량, 세율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규 격 | 세율(%) | 한계수량 | 대상업체 |
|---|---|---|---|---|---|
| 2834 | 질산카드륨 | | 15 | 72Ton | 건전지제조업체 |
| 2834 | 질산니켈 | | 15 | 64Ton | 건전지제조업체 |
| 9030 | Burn in Board | 메모리 반도체의 검사용의 것에 한함 | 15 | 5,000매 | 반도체제조업체 |

   나. 이 공고에 의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내수용에 한한다.
3. 구비서류
   가. 관세할당 추천신청서 1통
   나. 수입허가서 사본 1통
   다. 선하증권 사본 1통
   라. 수입허가 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 (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마.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4.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이내)
5. 추천서 유효기간의 연장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추천서의 분할
추천서를 교부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코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을 받은 자가 할당된 수량 또는 그 잔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타 할당된 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 추천서를 본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공고는 1988년 2월24일부터 1988년 6월30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수은함유 폐건전지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고시

**환경청 고시 제88-7호**

폐기물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은함유 폐건전지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3. 10
환 경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은함유건전지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재생신고자가 수은함유 폐건전지의 회수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은함유건전지"라 함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수은건전지와 산화은건전지로서 단추형의 것을 말한다.
2. "수은함유 폐건전지"라 함은 수은함유 건전지를 사용후 폐기한 것을 말한다.
3. "수입업자"라 함은 수은함유건전지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판매업자"라 함은 수은함유건전지 및 그 내장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시단위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폐건전지 재생신고자"라 함은 수은함유 폐건전지 중 폐산화은건전지로부터 은을 회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입업자의 수칙)

1. 수은함유 건전지를 수입하는 자는 반기별 수입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은함유 건전지 수입실적 보고서를 다음 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한다.
2. 제품 판매시 수은함유 폐건전지 교환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3. 수입한 수은함유건전지를 타 생산제품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자는 당해 제품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수은함유 폐건전지가 수거되도록 수거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판매업자의 수칙)

1. 판매업자는 영업소내의 잘 보이는 곳에 수은함유 폐건전지 수집함을 설치한다.
2. 수은함유건전지 판매시에는 폐건전지 교환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3. 수집된 수은함유 폐건전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 지정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만 양도한다.

제5조(수거자의 지정 및 수칙)

1. 다음 각호의 자로서 판매업소로부터 수은함유 폐건전지를 수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은함유 폐건전지 수거자 지정신청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청장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은함유 폐건전지 수거자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가. 수은함유건전지 수입업자
   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은함유 폐건전지 재생신고자
2. 수거된 수은함유 폐건전지 중 폐산화은 건전지는 수은함유 폐건전지 재생신고자에게 양도하고 폐수은건전지는 환경관리공단에 처분의뢰한다.
3. 수거지정자는 분기별 수거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은함유 폐건전지 수거실적 보고서를 다음 분기 익월 15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생 신고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생신고자의 지정 및 수칙)

1. 폐건전지를 재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 공지사항

서식의 수은함유 폐건전지 재생신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환경청장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별지 제 6호 서식의 수은함유 폐건전지 재생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3. 재생신고자는 분기별 재생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 7호 서식의 수은함유 폐건전지 재생실적 보고서를 다음 분기 익월 15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생신고자는 재생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양식 생략

## 최근 접수된 도서자료

| 도 서 명 | 발 행 처 | 발 행 일 |
|---|---|---|
| 1988. U. S. Industrial Outlook | U. S. Department of Commerce | 88 |
| 무역통계연보 | 관세청 | 87. 12 |
| 조사통계월보 | 한국은행 | 88. 2 |
| 국내 범용 소프트웨어 수요현황조사 보고서 | 韓國生産性本部 | 87. 12 |
| 韓國企業의 對美投資와 美國의 投資 環境 | 韓國貿易協會 | 87. 12 |
| Asia-Pacific Tech Monitor | APCTT社 | 87. 12 |
| International Business Week | A McGraw-Hill Pub. | 88. 3. 14, 28 |
| Asia Computer Weekly | Asian Business | 88. 3. 14 |
| African Trade Review | ATR社 | 87. 10 |
| Swiss Business | SHZ Group | 88. 3 |
| Electronics | A McGraw-Hill Pub. | 88. 3. 17 |
| Asian Business | Asian Business | 88. 2 |
| 電 子 發 展 | 工業技術研究院<br>電子工業研究所 | 88. 3 |
| コンピユートピア | CAコンピユータエジ社 | 88. 3 |
| 日經エレクトロニクス | 日經マグロヒル社 | 88. 3. 21 |
| 電 子 | 日本電子機械工業會 | 88. 3 |
| Look Japan | Look Japan社 | 88. 3 |
| B. K. Electronics | A Business Korea Pub. | 88. 4 |
| Industrial Equipment News | IEN Korea | 88. 3 |
| 행정과 전산 | 총무처 | 88. 3 |
| 주간내외경제 | 한국은행 | 88. 3. 12 |
| Korean Business Review | F KI | 88. 3 |
| HS 綜合便覽 | 韓國關稅研究所 | 88 |
| 1988년도 경제운용계획 | 경제기획원 | 88. 3 |
| 最近의 貿易環境變化와 中小企業의 對應 | 中小企業銀行 調査部 | 88. 1 |